



제4차 2021-2023년
개인정보 보호
기본계획

2020. 2.

제4차 2021-
2023년
개인정보 보호
기본계획

이 자료는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
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립한
「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(2021~2023년)」입니다.



제4차 2021-
2023년
개인정보 보호
기본계획

2020. 2.

CONTENTS

기본계획 개요	6
그간의 성과	7
기본계획 수립 경과	8

I 환경변화 분석 및 진단 9

II 비전 및 목표 17

III 추진과제

선제적
개인정보
보호 강화

과제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	21
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	
②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기반 확대	
③ 취약·소외계층 맞춤형 권리 보장	
과제 2 침해사고 예방·대응 체계 강화	22
①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체계 고도화	
②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	
③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지원 활동 강화	
과제 3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	23
①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제도 개선	
②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	
③ 정보주체 고충·피해 지원서비스 확대	
과제 4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	24
① 보호 교육 허브 구축 및 맞춤형 교육 강화	
② 보호 문화 조성 및 실천력 제고	



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	과제 5	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26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 확대 ②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내실화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	
	과제 6	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27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실효성 제고 ②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·조례 정비 및 지원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 선진화 연구 	
	과제 7	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28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 개선 ② 분야별 맞춤형 관리실태 점검체계 정비 ③ 가명정보 활용·데이터 결합 기업 대상 관리·감독 강화 	
	과제 8	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29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 ②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	
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	과제 9	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31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②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글로벌 상호운용성 강화 ③ 해외진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 	
	과제 10	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32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제 개인정보 보호 협의체 선도 ②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협력체계 강화 		
붙임 1. 과제별 소관기관 및 추진일정 33		
붙임 2. 용어 설명 36		

기본계획 개요

-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하여 3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

< 법적근거: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① >

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.

※ 주요내용 : 기본목표와 추진방향, 제도 및 법령의 개선,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, 자율규제의 활성화, 교육·홍보의 활성화, 전문인력의 양성 등

-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

- 제3차 기본계획('18~'20년)은 능동적인 보호활동 강화 및 보호제도의 현실화를 목표로 11대 추진과제를 선정·추진 중

🔗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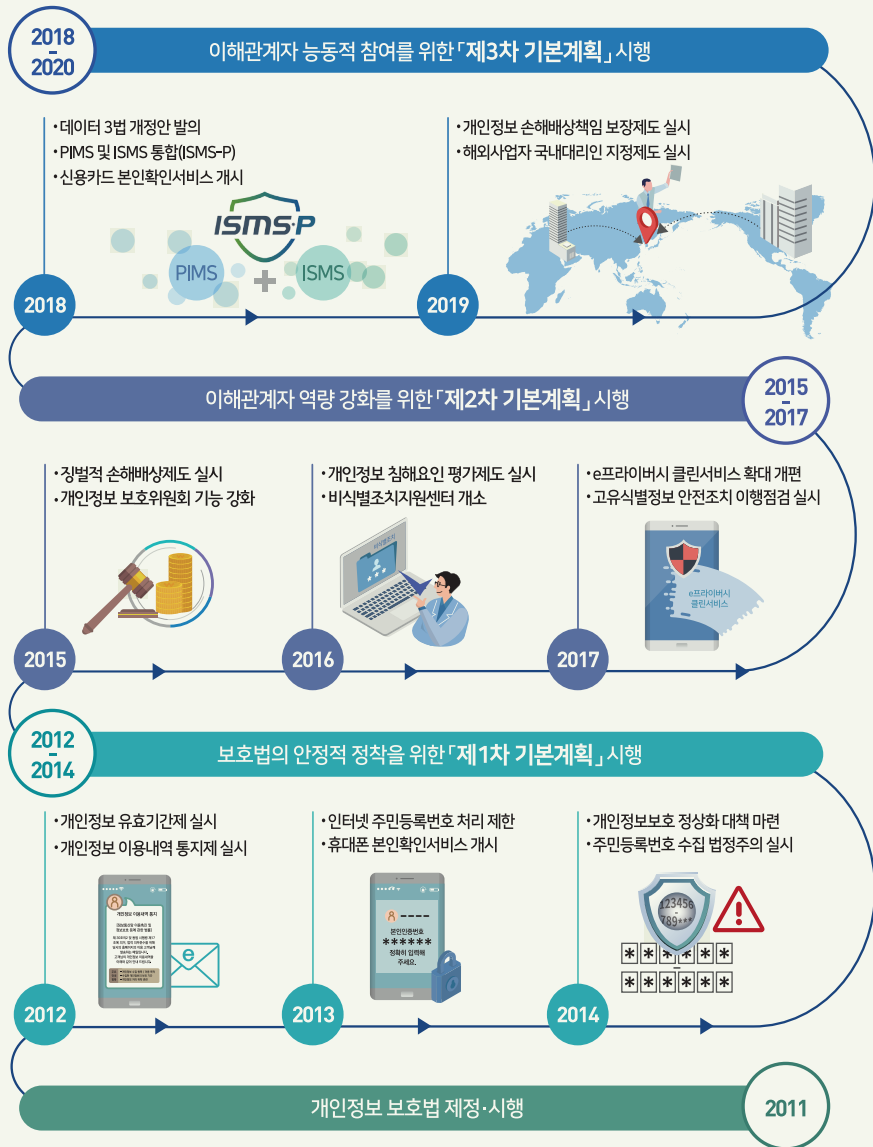
구분	주요내용
1차	<p>목표</p> <p>보호체계 정립, 보호역량 강화, 침해예방 및 대응 강화, 사회적 인식제고</p>
	<p>추진과제</p> <p>법체계 정비, 협의체계 구축, 국제협력 강화,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, 연구기반 구축지원, 처리실태 점검, 침해예방 대책 수립,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, 자율규제 활성화, 홍보강화 등</p>
2차	<p>목표</p> <p>보호 실천문화 조성 및 관리체계 강화, 선순환 생태계 조성,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</p>
	<p>추진과제</p> <p>권리보장 실질화, 국민 참여 및 홍보 강화, 침해예방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, 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, 조직내 관리·통제 체계 강화,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, 맞춤형 지원체계 활성화, 보호기술 개발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, 법체계 정비, 보호기준 개선, 글로벌 상호운용성 제고 등</p>
3차	<p>목표</p> <p>이해관계자의 능동적 보호활동 강화, 보호 제도의 현실화 및 글로벌 수준 제고</p>
	<p>추진과제</p> <p>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, 상담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고도화, 정보주체 권리 및 책임의식 제고, 자율적 보호체계 강화, 지능정보 기반 보호 및 산업 활성화,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,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, 법령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, 글로벌 리더십 확보, 법·제도 개선 사회적 논의 강화 등</p>

- 각 중앙행정기관은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

※ 시행계획 작성대상 : 18부, 4처, 17청, 6위원회(방통위, 원자력위, 금융위, 공정위, 권익위, 인권위), 국정원, 감사원, 총리실 등 48개 중앙행정기관

그간의 성과

- 2012년부터 3년마다 「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」을 수립·시행하여 관련 법제의 안정적 정착 및 개인정보처리자, 일반국민의 능동적 실천을 위한 전략적 체계 마련
- 지난 3차례 「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」을 토대로 지속적인 법·규제 개선 및 다양한 신규 정책·제도 시행을 통해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



기본계획 수립 경과

-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체계 구축(18.11월~'19.3월)
 -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관계부처 TF」 및 「전문가 자문단」 구성(19.3월)
 - ※ 행정안전부, 방송통신위원회, 금융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및 학계, 법조계, 업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 (총 30여명)
- 관계부처 및 분야별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4차 기본계획 초안 마련(19.4월~8월)
 - 제1~3차 기본계획 정책·성과 진단 등을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수립
 - 개인정보 처리 환경변화 및 미래예측 등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전략체계 및 세부 추진과제(안) 도출
- 일반국민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분야별 전문가(단체)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(19.9월~11월)
 - 「관계부처 TF」 및 「전문가 자문단」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
 - ‘국민생각함(idea.epepole.go.kr)’을 통해 일반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조사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(19.9월)
 - 중앙행정기관 대상 부문별 계획 작성지침 통보 및 계획 취합(19.9월)
 -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별 전문단체 서면 의견조회(19.9월)
 - ※ 개인정보보호법학회, 한국정보법학회 등
 - 지역(전북, 대전) 현장 간담회 및 의견수렴 워크숍(19.10월~11월)
 - 경제·산업계, 유관기관 및 시민·소비자 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(19.9월, 11월)
 - 중앙행정기관 대상 기본계획(안) 의견 조회(19.11월)
-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한 제4차 기본계획 확정 및 대국민 공표(20.2월)

I

환경변화 분석 및 진단



I 환경변화 분석 및 진단

1 개인정보 환경 분석

▶ 디지털 혁신 경쟁 속 개인정보의 중요성 확대

- 구글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은 데이터·인공지능(AI) 관련 기술 확보* 등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

※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 7대 기업이 데이터 기반 기업('18년, S&P Capital IQ)

* 아마존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비어스(Orbeus)를 인수,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스케줄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 지니(Genee)를 인수('16년)

- 인공지능 스피커, 지능형 CCTV, 핀테크 등 신기술·서비스 보급 확대로 음성, 영상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증가

-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삶의 편의성은 향상되었으나,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생성되고 이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

※ 구글의 자회사 네스트(Nest)는 온도계, 웹카메라, 홈 보안기기, 화재경보기 등 가정에 설치되는 제반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가정 내 구성원의 행태정보를 수집

-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지키면서 안전한 활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

- 새롭게 등장할 융복합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

▶ 글로벌 서비스 보편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협 증가

- 글로벌 소셜 미디어 및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에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 증대
 - ※ 페이스북 약 7천만 명, 메리어트호텔 약 5억 명의 글로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('18년)
- 공공·민간 구분 없이 해킹,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
 - ※ '07년부터 '17년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분석한 결과, 6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활용('19년, 참여연대)
 - ※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약 18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('19년, KBS 뉴스)
- 무료 백신, 웹 호스팅, 그룹웨어 등 많은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해킹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
 - ※ 특정 쇼핑몰 웹 솔루션의 취약점 노출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모든 쇼핑몰의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('18년)
- 영상, 이미지 등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형, 침해 원인, 사이버공격 기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고대응 체계 개선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

▶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적 패러다임 전환

- EU,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데이터 활용은 촉진하면서도 데이터 안보,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강화
- 디지털 무역시대에 국가별로 다양한 개인정보 규제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장벽으로 인식
-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이 일상화 되는 디지털 통상의 확대에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확대
 - ※ 상이한 개인정보 법체계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(GDPR)의 적정성 결정,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(Cross-Border Privacy Rules, CBPR) 등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논의 지속
 - ※ 전자상거래,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, RCEP)타결 등 디지털 통상 논의 지속

- ▶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정보사회 도래로 개인정보의 가치 상승
- ▶ 개인정보의 통제는 어려워지고,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위협은 증가
- ▶ 글로벌 침해사고, 디지털 통상 등에 대비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필요

▶ 정부 중심의 획일적·중복적 규제 개선 필요

- 변화하는 환경과 정보주체의 편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기업의 부담은 증가하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효과도 미흡

※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, IAPP)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('18년)

※ 정보주체 약 85%, 기업 약 73%가 동의의 유용성에 대하여 부정적 답변('18년,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이니셔티브(SGI) 연구소)

- 전통적인 규제 방식(사전적 규제, 포지티브 규제 등)이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기술·산업 활성화를 지연시킨다는 문제 제기 지속

- 융복합 서비스의 확대로 중복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증가하고, 소관부처들도 적용범위에 대한 혼란 가중

※ 기존 안내서에 설명이 되지 않는 서비스 형태, 범위 등으로 관련 규제의 정확한 적용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보도 부족

- 공공 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정 의무대상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사 점검·진단 등을 중복으로 받아 부담 가중

※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안전조치 조사는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(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) 점검·진단 항목 30개 중 24개가 유사·동일

※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

제도	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진단	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	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	안전조치 조사	ISMS-P 인증제도
적용 대상	공공기관	공공기관	개인정보 처리 기업·기관	고유식별정보 (5만명 이상) 처리 기업·기관	기업·기관
도입 취지	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	개인정보 침해 위험분석·개선	법 위반사실 확인	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	개인정보·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전한 관리
점검 방식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(ISMS)/자율(P)

▶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행사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필요

- 형식적 동의의 일상화와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처리가 복잡해져 개인의 통제권 상실 우려
- 데이터 이동권,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능동적 권리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
- 다양한 개인정보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주체의 인지도나 침해 후 피해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 저조
 - ※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, 개인정보 분쟁조정,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,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운영
 - ※ 정보주체 28.5%가 '피해구제 상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'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('19년, 개인정보보호위원회·행정안전부)
-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및 민원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, 각 지역별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한 상황
 - ※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위해 전국 5개(강원·부산·광주(제주 출장소 포함)·대전·대구)도시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인권서비스를 제공
- 아동, 다문화 가정 등 취약·소외계층의 개인정보 관련 법·제도 인지 부족 및 대처 미숙으로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침해 2차 피해에 노출

▶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지원 확대 필요

- 다수 사업자는 법과 고시에 규정된 내용만 준수한다는 소극적 태도로 기술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보호조치 적용 지연 및 관련 투자 미약
 - ※ 정보보호(개인정보보호)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36.2%이며, IT예산 중 5% 이상 예산을 편성한 사업체는 1.7%에 불과('18년, 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개인정보 자율규제 시행 초기('16년~)부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 왔으나, 아직까지 자율규제 단체의 역량(인력, 예산 등)이 미흡하고 소통 체계도 미비
 - ※ 자율규제단체 담당자 1인이 관리하는 회사사 수는 평균 8,500여개('19년)
 - ※ 정보보호 예산이 전혀 없거나 2천만원 이하인 곳이 전체 단체의 36%를 차지

- 법률 지식과 기술 능력을 겸비한 개인정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양성체계도 미흡한 상황
 - ※ '22년까지 산업계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수요는 2.6만명인 반면, 공급은 1.7만명 수준에 그쳐, 약 9천명의 인력 부족 전망('19년, 과학기술정보통신부)
 - ※ IAPP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자(Data Protection Officer, DPO) 수요를 1,330명으로 예측('18년)
- 중소·영세 사업자,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,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
 - ※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지방 교육은 연 10회 미만으로 지방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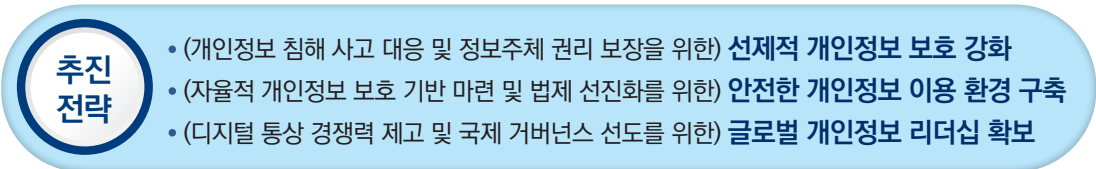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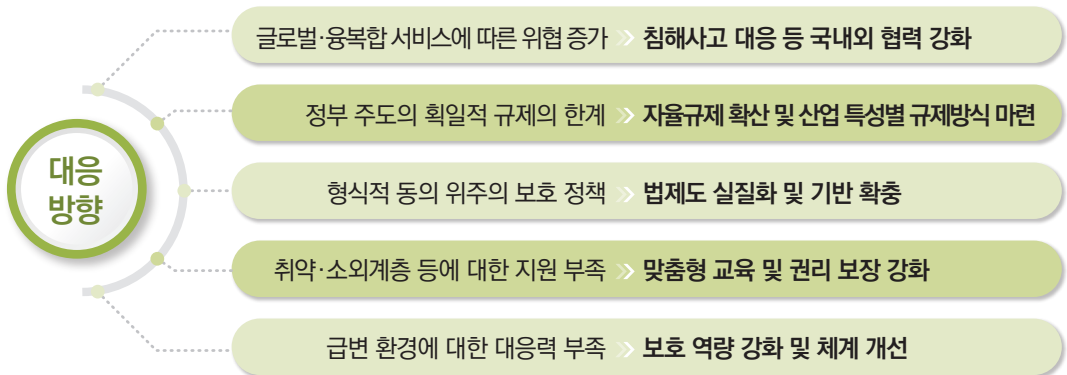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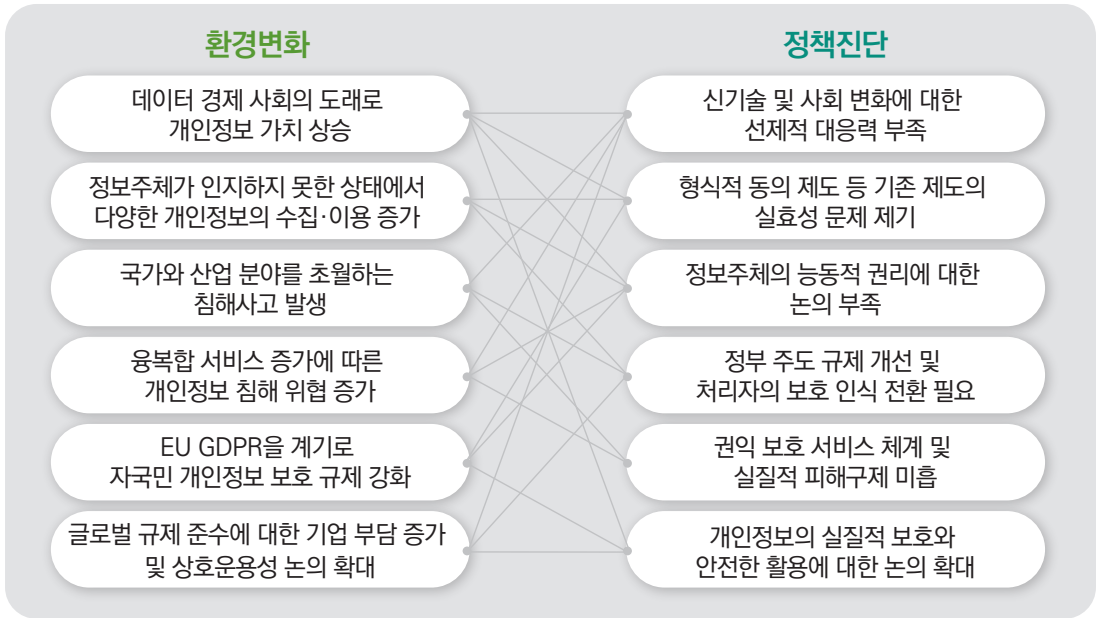
▶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

- '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', '데이터·AI 경제 활성화 계획'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와 함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
 - ※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확산 시 정보주체는 '필요 이상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' 및 '수집된 개인정보의 무단 활용'을 가장 우려함('18년, 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가명·익명처리 등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이 필요
 - ※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위해 산업계는 ①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통·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(42.9%), ②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처리기술 지원(14.9%)을 최우선으로 요구('18년,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)



- ▶ 개인정보 처리 환경 등을 고려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
- ▶ 실질적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
- ▶ 사업자의 인식 제고,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련 지원 노력 필요

3 종합분석 및 전략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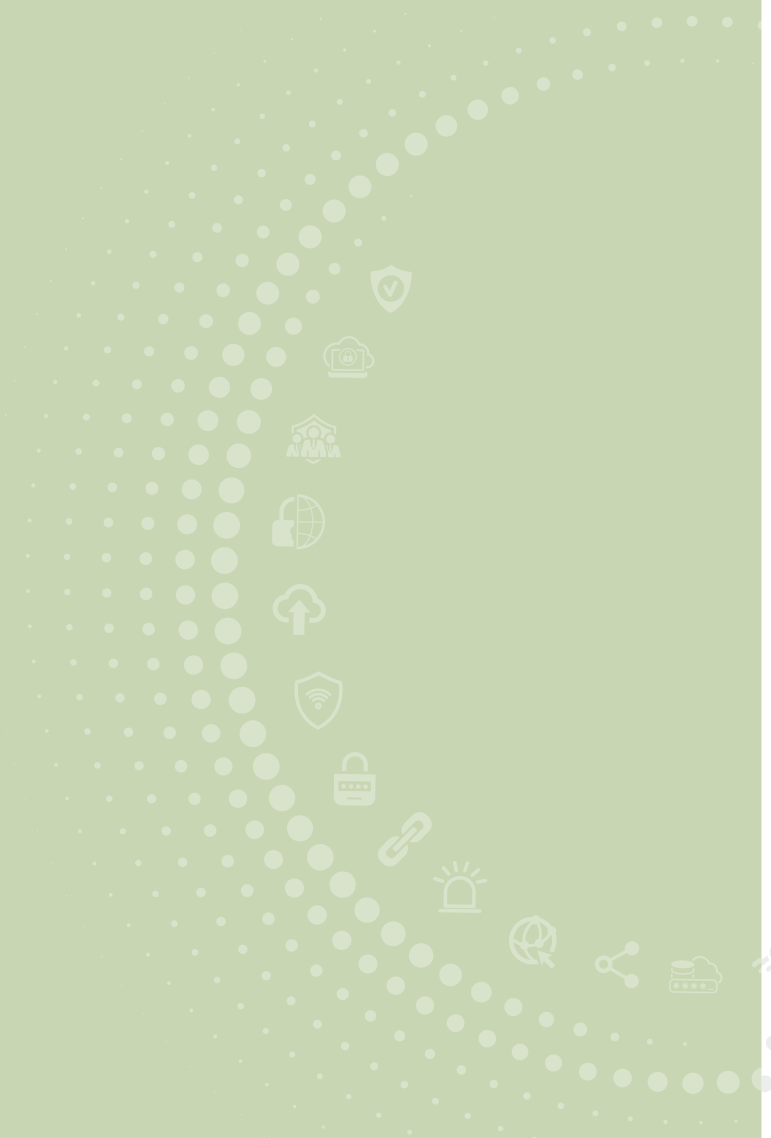


제4차 2021- 2023년
개인정보 보호
기본계획



II

비전 및 목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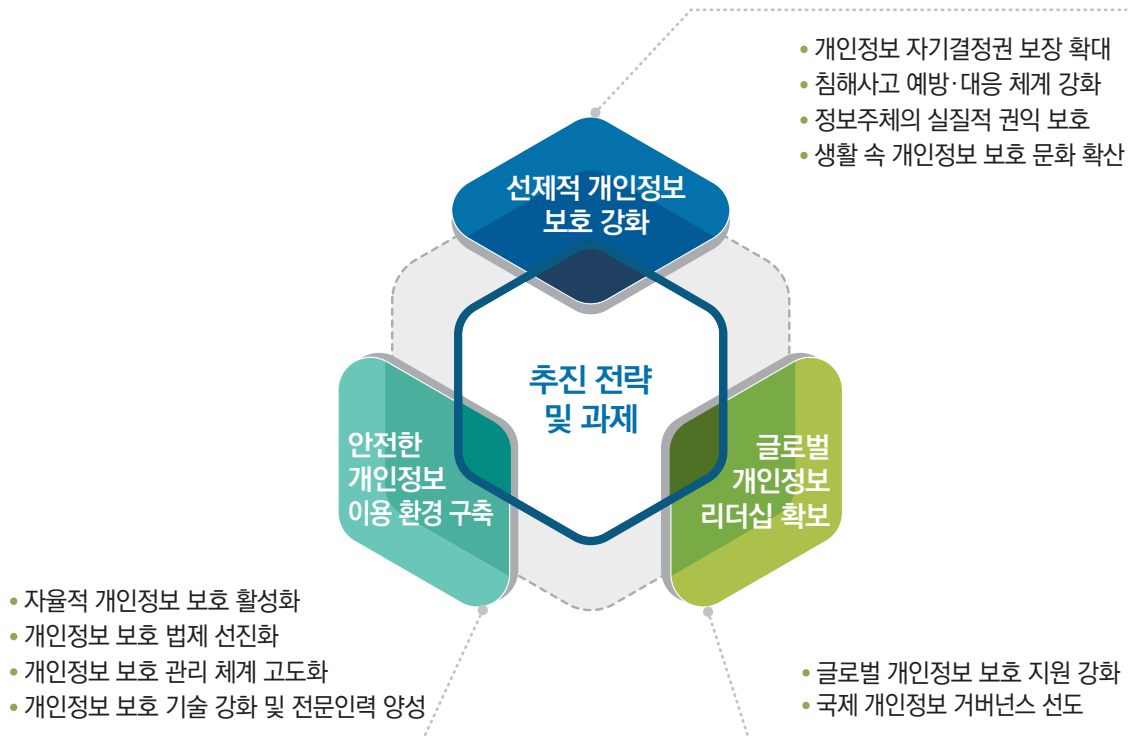
II 비전 및 목표

비전

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하여
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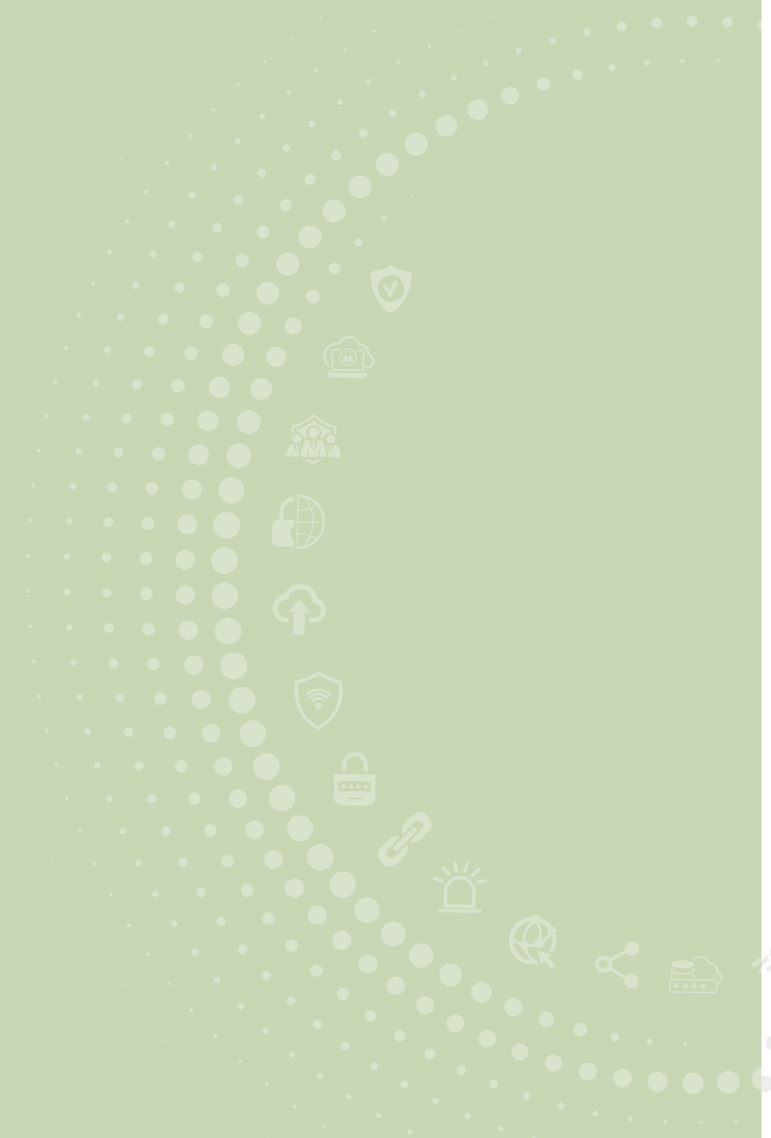
목표

-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 및 정보주체 권익 증진
- 자율과 협력 기반의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



III

추진 과제



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

과제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

-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
- 2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기반 확대
- 3 취약·소외계층 맞춤형 권리 보장

과제2 침해사고 예방·대응체계 강화

- 1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체계 고도화
- 2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
- 3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지원 활동 강화

과제3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

- 1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제도 개선
-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
- 3 정보주체 고충·피해 지원서비스 확대

과제4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

- 1 보호 교육 허브 구축 및 맞춤형 교육 강화
- 2 보호 문화 조성 및 실천력 제고



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
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·관리 전반에서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동의 및 고지제도 개편
 -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을 위한 다양한 수단 개발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
 - 개인정보처리자의 홈페이지·앱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이용내역 열람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, 서비스 등 개선

2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기반 확대

- 데이터 이동권,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 권리의 법제화 방안 검토
- 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선 및 사전 인증제 또는 사후 심사제 도입 검토
 - ※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와 연계 추진

3 취약·소외계층 맞춤형 권리 보장

- 노인, 장애인, 다문화 가정, 북한이탈주민, 중소기업인 등 관련 법령* 내 권익 침해요인 조사 및 법령 정비
 - * 노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, 다문화가족지원법, 북한이탈주민 보호· 정착 지원법 등
 - 취약·소외계층 담당기관**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관리체계 개선
 - ** 노인복지관, 아동센터, 장애인복지관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하나센터 등
-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연령 적합 설계(Age-Appropriate Design)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안내서 마련
- 동의서 및 처리방침 등에 대한 시청각 기능 제공 등 정보 접근권 강화

1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체계 고도화

- 개인정보 침해 사례(유형·원인, 점검이력, 위반사항, 언론보도 등)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위협요인 및 취약분야 사전 예측
 - 취약분야 관계부처 공동 기획점검, 기술 지원 등 예방조치 강화
- AI 기반 개인정보 노출·불법유통 탐지시스템 강화
 - 다변화되는 개인정보 유형·패턴(정형→비정형 데이터) 및 음성화되는 불법유통 행태 등을 자동 학습하여 실시간 탐지역량 확대
 - 중소·영세기업,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조치 등 기술 지원 강화

2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

- 대규모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공동조사(기획점검 포함)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‘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’ 설치·운영
 - 범정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정기 모의훈련 실시
 - ※ 금융, 보건의료 등 민감정보 관련 부처와 전문·수사기관 등 참여
- 금융, 의료 등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맞춤형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매뉴얼 개발

3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지원 활동 강화

- 신기술·서비스 개발 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(Privacy by Design & Default, PbD) 안내서 개발·보급

1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제도 개선

- 유럽, 미국, 일본 등 주요국의 피해구제 제도 및 지원서비스 비교 연구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마련
- 개인정보 침해 피해예방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‘정보주체 권익 증진기금’ 조성 방안 연구
※ 연구 과정에서 기금 조성 방안의 타당성 등을 소관 부처와 협의
-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및 유출사고 피해액 산출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 손해배상액 산출근거 마련

2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

-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,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정절차 참여 의무화, 사실 조사권 부여 등 제도 개선 검토
-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 역할 확대 및 유관기관과 협력적 관계 구축 추진
-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

3 정보주체 고충·피해 지원서비스 확대

- 개인정보 침해 민원포털을 개편하여 상담 및 신고, 분쟁조정 등을 온라인 단일창구에서 원스톱 지원 및 ‘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’ 구축 추진
 - 온·오프라인 전문상담을 통해 맞춤형 고충피해 지원 서비스 제공
 - * 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등과 연계 검토
-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‘개인정보 침해 민원대응협의체’ 운영
 - ※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침해민원 처리(부처이관) 절차 정비, 침해상담(법률상담 포함) FAQ 및 표준매뉴얼 개발, 민원 담당자 교육 지원 등

1 보호 교육 허브 구축 및 맞춤형 교육 강화

- 정보주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허브 구축
 -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전문강사 양성, 교육 안내 등
 - ※ 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 교육청, 대학 등과 연계하여 전국 교육망 구축
- 온라인 맞춤형 동영상 콘텐츠 개발, 교육포털(교과과정 추천, 교육시간·학점 관리 지원 등) 구축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강화
- 개인정보 보호의 올바른 활용 및 이해력(Privacy Literacy) 교육 기반 조성
 - 개인정보 보호(피해예방 포함)와 디지털 활용 및 이해력(Digital Literacy) 교육을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신기술·서비스 활용 및 보호 격차 해소 지원

2 보호 문화 조성 및 실천력 제고

- 범국민 개인정보 보호 관심도·실천력 제고를 위해 '아시아·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(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, APPA) 개인정보 보호 인식주간' 연계 캠페인 및 국민 참여 이벤트 추진
- 정보주체 및 처리자의 자발적 참여 기반 '개인정보 청소하는 날'(휴면계정 탈퇴 및 유효기간 경과 정보 파기) 정례화
- 소셜 미디어,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령별 맞춤형 홍보 실시
-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'개인정보 보호의 날' 법정기념일 지정 및 유공자 포상 방안 추진
 - 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정·시행일인 3월 29일 또는 9월 30일 등 검토

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

과제5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

- 1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 확대
- 2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내실화
-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

과제6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

- 1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실효성 제고
- 2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·조례 정비 및 지원
- 3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연구

과제7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

- 1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 개선
- 2 분야별 맞춤형 관리실태 점검체계 정비
- 3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기업 대상 관리·감독 강화

과제8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

- 1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
- 2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



1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 확대

-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협회·단체가 참여하는 ‘자율규제단체 협의회’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
-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기관 및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대
 - 자율규제단체를 중심으로 영세·소규모 사업자의 관리실태 자율 점검 확산
 - ※ 교육, 의약 등 19개 자율규제단체(19년)를 단계적으로 30개로 확대
- 자율규제단체의 자율준수 수준 평가, 수준별 지원(교육·상담, 자율점검 지원 등)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 체계 구축
 - ※ 분야별 특성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실무 안내서, 사례집 제작·배포 등
- 지역 소재 사업자 대상 현장방문 상담, 시스템 점검 등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마련

2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내실화

-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(ISMS-P) 개선
 - 처리자 규모 및 보호수준에 맞춘 ISMS-P 등급제 도입 등 검토
-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및 지원
 - ※ 인증기업 대상 관리실태 점검 항목 일부 면제 등
-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준 개선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강화
 - ※ 기술·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증기준, 인증심사원 선발·유지 기준, 부적합자 자격취소 등

3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

- 개인정보 영향평가(Privacy Impact Assessment, PIA) 의무대상 기준, 평가항목 개선 및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
- 공공 외에 민간 부문도 개인정보의 민감·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 마련

1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실효성 제고

-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요건 정비 등 글로벌 법제 수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합리화
-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규정과 특례규정(舊 정보통신망법 규정)* 간 유사·중복내용 정비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일원화
 - * 수집·이용 규정,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도 등
- 분야별 개별법에 산재된 개인정보 유사·중복·상이 규정에 대한 조사·정비
-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및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검토
 - ※ 先시정권고·後제재 등 행정기관의 규제방식 개선, 형사·경제제재의 합리화 등

2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·조례 정비 및 지원

- 개인정보 처리 근거 법령·조례에 대한 현황 파악*을 통해 사생활 침해 최소 등 보호법 원칙에 입각하여 적정성 검토 및 정비 지원
 - ※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관련 조례 제정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검토
 - * 사회복지·의료·교육·노동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우선 실시
-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공개 필요 여부, 공개 방법 등의 적정성 검토 및 법령 개선
 - ※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보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의 공개수준 검토 및 개선 등

3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연구

- 포지티브 형태의 규제에서 위험 기반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방안 연구
- AI, IoT 등 신기술, 데이터 활용에 대응한 실무 안내서 및 제도 정비 방안 검토
 - ※ 기술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규제, 개인정보 침해사고 가능성 분석 등
-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제도,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거나 기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저효용 제도 개선 연구
- 정부·학계·산업계·시민사회 등 전문가 중심의 개인정보 정책 자문그룹(Advisory Group) 신설

1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 개선

- 평가지표 종합 개선*, 서면(증빙자료 제출) 중심의 진단을 관리체계에 대한 현장점검 중심으로 변경 등 관리수준 진단의 내실화 추진
 - * 기재부,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논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평가지표 비중 검토
- 중앙부처가 보호위와 협업하여 소속·산하기관의 관리수준을 진단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관리·감독을 체계화
 - ‘범부처 관리수준 진단 실무협의회’를 구성·운영하고, 관리수준 우수(개선)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강화

2 분야별 맞춤형 관리실태 점검체계 정비

- 처리자 특성(업종, 규모 등) 및 점검 목적(사전예방, 사고조사 등)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 프로그램 및 표준화된 점검툴 개발
- 스마트시티, 자율주행차,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생활밀착형 신기술·서비스 대상 관리실태 점검 및 보호조치 지원

3 가명정보 활용·데이터 결합 기업 대상 관리·감독 강화

- 산업·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분야별로 위험요인 분석 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시행
- 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결합 기업 및 분야, 데이터 유형 등에 대한 실시간 점검
- 주요 데이터 활용·취약 분야* 를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 실시
 - * 데이터 결합·연계 전문기관, 통신·카드·IT 등의 데이터 기업 등
- 가명정보·데이터 결합물을 재식별하거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 조치 시행

1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

-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*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·학·연·관 ‘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협의체’ 마련
 - 신기술·서비스 기반 개인정보 보호 기술 기초연구 활성화 및 정부 차원의 R&D 투자 지원 연계 등
 - 국내 강소기업 발굴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
 - * 가명·익명처리, 동형암호화,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(Privacy Enhancing Technology, PET), AI 기반의 개인정보 오남용 탐지 등
- 가명·익명처리 기법 및 데이터 결합·연계 체계 등에 대한 국제표준* 연구 선도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
 - 가명·익명처리 기술 연구 및 실증모델 발굴 등
 - * 데이터 비식별화(가명처리) 인증 프레임워크(ITU-T, '19.1~'22.10)
- 스마트시티 및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지원

2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

- 산업·업종 특성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신규인력 및 실무·전문가 등으로 연계되는 생애주기형 인력양성 체계 확립
 - 법·제도 및 기술담당 등 업무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·운영
 - ※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, 경력 개발을 위한 전환 교육 등
- 정부·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적정기준 설정 및 확보 유도
 - ※ 개인정보 전담부서가 있는 공공기관은 1.9%에 불과하고, 2년 이상 경력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도 43.4%로 민간기업(83.4%)의 절반 수준에 불과(‘19년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)
- 개인정보 책임자(Chief Privacy Officer, CPO)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
 - CPO의 책임·권한 및 역할 개선을 통해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
 -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

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

과제9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

- 1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
- 2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글로벌 상호운용성 강화
- 3 해외진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

과제10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

- 1 국제 개인정보 보호 협의체 선도
- 2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협력체계 강화



1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

- 해외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를 확대 구축하여(중국, 유럽, 미국 등) 침해사고 현장조사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등 현지 지원 강화

※ 국내 기업 진출 및 국민 거주 현황, 유·노출 사고 및 법제도 수준 등 국가별 특성 고려

- 국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(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, GPEN),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집행 협정(Cross-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, CPEA) 등 다자간 조사·집행협력 기구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 대규모 침해사고를 공동 조사할 수 있는 국제공조 강화

2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글로벌 상호운용성 강화

-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확산에 대응한 국외이전 관련 법제 정비
 -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, 글로벌 기업의 국외이전 관리·감독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
 - 한국형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제도 도입 추진

- EU 적정성 결정(Adequacy Decision) 승인 취득 및 유지·관리를 통해 국내 기업 유럽시장 진출 지원

※ EU 적정성 결정 시 국내 기업이 EU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 안전조치(표준계약조항(Standard Contractual Clauses, SCC),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(Binding Corporate Rules, BCR) 등) 부담 완화

- APEC CBPR 인증제도 도입·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

3 해외진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

-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보포털 강화
 - EU, 미국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관련 최신 법률 정보(원문, 번역, 해설서), 주요 동향 등을 제공하는 통합 법률 정보 서비스 구축
- 중소·영세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국가별 특성에 맞춘 법·규제 교육 및 상담 지원 확대

1 국제 개인정보 보호 협의체 선도

-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제회의(Global Privacy Assembly, GPA), APPA, IAPP 등 주요 국제기구 내 워킹그룹, 국제표준화 작업반 등 정책적·기술적 연구 활동 참여 확대
 - APPA의 커뮤니케이션 작업반(Communications WG), 기술 작업반(Technology WG), 통계 작업반(Comparative Privacy Statistics WG) 참여 등
- APPA 개최(21.5월) 및 GPA 유치(23년)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 및 다자간 협력 주도
 - 주요국 모범 사례 발굴(접근모델·전략·성과 등),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, 인식 제고 등 다자간 협력 사업 제안
- UN 거버넌스 센터, OECD 정책센터 등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포럼 등 개최 추진
 - 한국의 선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자료 및 정책보고서 등 다국어 서비스 제공
 - 개인정보 보호 법·제도가 미비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정책·기술 지원 프로그램 마련

2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협력체계 강화

-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외공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 파견 검토
- 민간 개인정보 보호 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



붙임 1. 과제별 소관기관 및 추진일정

추진과제 및 과제		추진일정	주 관	협 력
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	1.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			
	동의 및 고지제도 개편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-
	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내역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 확대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데이터 이동권 등 정보주체 권리의 법제화 방안 검토	~'21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-
	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선 및 사전 인증제, 사후 심사제 도입 검토	~'21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-
	취약·소외계층 관련 법령 내 권익 침해요인 조사 및 법령 정비	~'23년 하반기	통일부, 여가부, 복지부, 법무부	보호위
	아동 연령 적합 설계 및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 안내서 마련	~'22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등서 및 처리방침 등에 대한 정보 접근권 강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2. 침해사고 예방·대응 체계 강화			
	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위협요인 및 취약분야 사전 예측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전부처
	AI 기반 개인정보 노출·불법유통 탐지시스템 강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대규모 침해사고 대응 '법정부 합동조사 협의체' 설치·운영	~'21년 상반기	보호위	전부처
	피해 위험도가 높은 분야 맞춤형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매뉴얼 개발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, 복지부	전부처
	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 및 기본 설정(Privacy by Design & Default, PbD) 안내서 개발·보급	~'22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3.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			
	피해구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'정보주체 권익 증진기금' 조성 방안 연구	~'23년 하반기	보호위	기재부
	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및 유출사고 피해액 산출 연구	~'23년 하반기	보호위	-
	조정절차 참여 의무화, 사실 조사권 부여 등 제도 개선 검토	~'21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조정위원 역할 확대 및 유관기관과 협력적 관계 구축 추진	~'21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개인정보 침해 민원포털 개편 및 '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' 구축 추진	~'23년 하반기	보호위	과기부
	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'개인정보 침해 민원대응협의체' 운영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권익위	전부처
	4.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			
	정보주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허브 구축	~'23년 하반기	보호위	행안부, 과기부, 교육부
	맞춤형 동영상 콘텐츠 개발, 교육포털 구축 등 온라인 교육 강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과기부, 교육부
	개인정보 보호 올바른 활용 및 이해(Privacy Literacy) 교육 기반 조성	~'23년 하반기	보호위	과기부, 교육부
	'APPA 개인정보 보호 인식주간' 연계 캠페인 및 국민 참여 이벤트 추진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자발적 참여 기반 '개인정보 청소하는 날' 정례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령별 맞춤형 홍보 실시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'개인정보 보호의 날' 법정기념일 지정 및 유공자 포상 방안 추진	~'21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	

추진과제 및 과제		추진일정	주 관	협 력
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	5.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			
	'자율규제단체 협의회'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	~'21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기관 및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대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자율규제단체의 자율준수 수준 평가, 수준별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 체계 구축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지역 소재 사업자 대상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마련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(ISMS-P) 개선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과기부	-
	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및 지원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과기부	-
	개인정보 보호 인증기준 개선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강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-
	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민간 부문 자율적인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6.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			
	글로벌 법제 수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합리화	~'21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전부처
	일반규정과 특례규정 간 유사·중복내용 정비로 보호법 실질적 일원화	~'21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전부처
	분야별 개별법에 산재된 개인정보 유사·중복·상이 규정 조사·정비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전부처
	책임성 강화,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제재방식 개선 검토	~'21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전부처
	개인정보 처리 근거 법령 조례에 대한 현황 파악, 적정성 검토 및 정비 지원	~'23년 하반기	전부처	보호위, 행안부(지자체)
	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필요 여부, 공개 방법 등의 적정성 검토 및 법령 개선	~'23년 하반기	전부처	보호위
	위험 기반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방안 연구	~'23년 하반기	보호위	-
	기술, 데이터 활용에 대응한 실무 안내서 및 제도 정비 방안 검토	~'23년 하반기	보호위	-
	역차별 제도, 기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저효용 제도 개선 연구	~'23년 하반기	보호위	-
	전문가 중심의 개인정보 정책 자문그룹(Advisory Group) 신설	~'21년 하반기	보호위	-
	7.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			
	관리수준 진단의 내실화 추진	~'23년 하반기	보호위	기재부, 행안부
	중앙부처가 보호위와 협업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관리·감독 체계화	~'23년 하반기	전부처	보호위
	처리자 특성 및 점검 목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 프로그램 및 표준화된 점검툴 개발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-
	생활밀착형 신기술·서비스 대상 관리실태 점검 및 보호조치 지원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금융위	-
	산업·분야별로 전문기관 지정,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시행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점검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주요 데이터 활용·취약분야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 실시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가명정보·데이터 결합물을 재식별하거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엄격한 처벌 조치 시행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
추진과제 및 과제		추진일정	주 관	협 력
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	8.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			
	산·학·연·관 '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협의체' 마련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과기부	산자부, 중기부
	가명·익명처리 기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 연구 선도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과기부	산자부, 중기부
	스마트시티 및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자문 지원	~'23년 하반기	보호위, 과기부	산자부, 중기부
	산업·업종 특성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·운영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	정부·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적정기준 설정 및 확보 유도	~'23년 하반기	기재부, 행안부	보호위
	개인정보 책임자(CPO)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전부처
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	9.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			
	해외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를 확대 구축하여 현지 지원 강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, 법무부
	글로벌 사업자 대규모 침해사고를 공동 조사할 수 있는 국제공조 강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, 법무부
	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확산에 대응한 국외이전 관련 법제 정비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, 산자부
	EU 적정성 결정 승인 및 유지·관리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, 산자부
	APEC CBPR 인증제도 도입·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, 산자부
	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보포털 강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, 산자부, 법무부
	해외진출 국가별 특성에 맞춘 법·규제 교육 및 상담 지원 확대	~'23년 하반기	보호위	과기부, 외교부, 산자부, 중기부
	10.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			
	주요 국제기구 내 워킹그룹, 국제표준화 작업반 등 정책적·기술적 연구 활동 참여 확대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, 산자부
	APPA 개최 및 GPA 유치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 및 다자간 협력 주도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, 과기부
	UN 거버넌스 센터, OECD 정책센터 등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포럼 등 개최 추진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, 행안부
	개인정보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외공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 파견 검토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
민간 개인정보 보호 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	~'23년 하반기	보호위	외교부	

붙임 2. 용어 설명

- **APPA**(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): 아시아·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
- **BCR**(Binding Corporate Rules):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
- **CBPR**(Cross-Border Privacy Rules):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
- **CPEA**(Cross-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): 국경 간 프라이버시 집행 협정
- **DPO**(Data Protection Officer):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자
- **GPA**(Global Privacy Assembly):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제회의(舊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, ICDPPC)
- **GPEN**(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): 국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
- **SCC**(Standard Contractual Clauses): 표준계약조항
- **IAPP**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):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
- **ISMS-P**(Personal Information &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):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
- **PbD**(Privacy by Design & Default):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
- **PET**(Privacy Enhancing Technology):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
- **PIA**(Privacy Impact Assessment): 개인정보 영향평가
- **RCEP**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: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
- **EU 적정성 결정**(Adequacy Decision): EU 집행위원회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,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
- **가명정보**: 가명처리를 통하여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
- **가명처리:**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
- **네거티브 규제:**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
- **데이터 이동권:**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① 체계적으로 구성되고, ②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③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
- **디지털 리터러시:**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
- **익명정보:** 시간·비용·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- **익명처리:** 성명, 전화번호 등 식별자는 완전히 삭제하고, 나이나 성별 혹은 주소 등 준식별자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슷한 속성끼리 묶는 범주화를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
- **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거부권:**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하여 ①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② 이와 유사한 중대한 효과를 미치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 의존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
- **포지티브 규제:**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을 나열한 뒤,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

제4차 2021-2023년
개인정보 보호
기본계획

